

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
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(전화번호:)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	⑥ [] 중소기업, [] 중견기업
--------	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③ 공제세액 계산내용

공제 금액	공제대상금액(⑦)		공제율 (⑧)	공제 금액(⑦ × ⑧)
	⑦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		5/1,000	원
⑧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		3/1,000	원	
⑨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한 금액 중 지급기한이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		15/10,000	원	
⑩ 공제금액의 합계			원	
⑪ 산 출 세 액			원	
⑫ 한 도 액(⑪ × 10/100)			원	
⑬ 공 제 세 액(⑩과 ⑫중 적은 금액)			원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4항에 따라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	없음
------	----	-----	----

작성 방법

- ⑦~⑨의 공제대상금액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습니다.
- 공제금액란(⑦~⑩)은 구매기업이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을 지급기한이 15일 이내인 금액, 15일 초과 30일 이내인 금액과 30일 초과 60일 이내인 금액으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⑪ 산출세액란은 거주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·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[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40호서식(1)]의 ㉓ 산출세액란의 금액에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고,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서식)의 "㉔ 산출세액"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